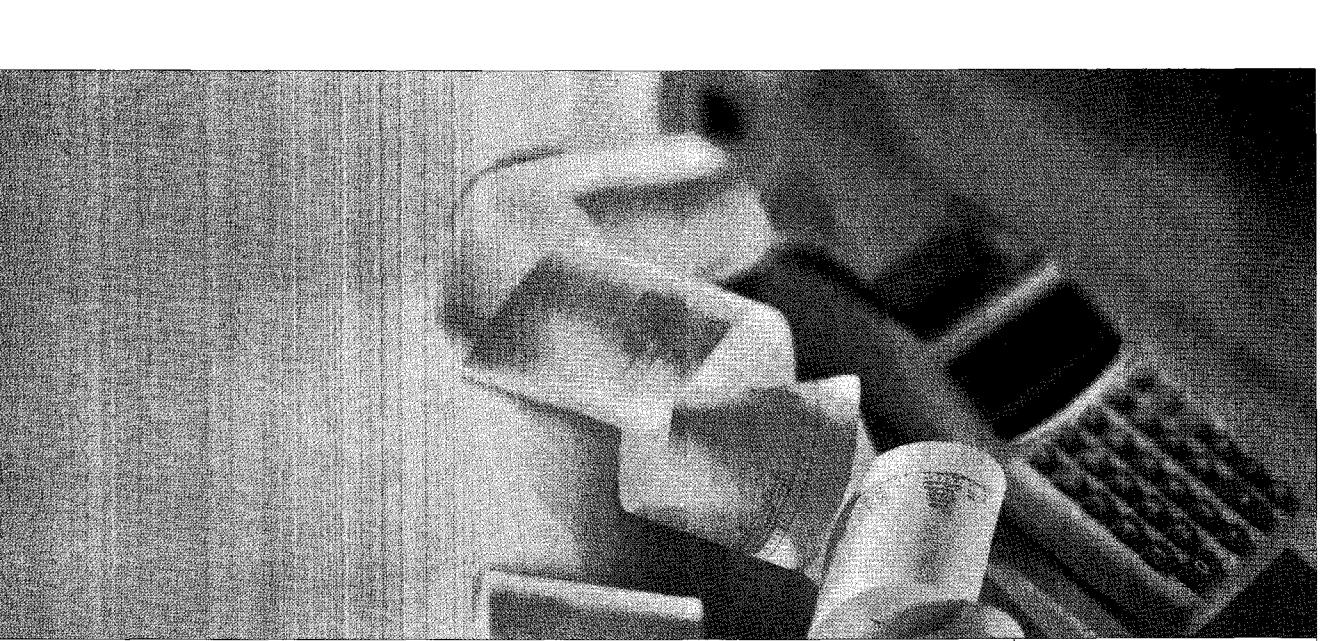


#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

경기도 2005년 윤리법에서는 「재활용 시설 설치자와 기반시설 구축과 재활용시설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활용시설 기반개선,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투자지원하고 있다.

##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

지원분야	융자지원 대상자	융자지원 대상자	융자규모
시설 자금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 자 단체	재활용을 위한 장비·장치· 설비 등의 제작·구입 설치 비 및 건축비	450억원
기술 개발 자금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 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	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 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 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, 소요 인건비, 제경비	
경영 안정 자금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1조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	재활용시설운영에 필요한 경 비(원료구입비, 인건비, 공공 요금, 연료비, 운송비, 사설정 기검사 수수료에 한함)	150억원
폐기물 감량화 시설 자금	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	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공정 개선 및 재이용에 필요한 장비, 장치, 설비 등의 제작, 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	50억원
유통 판매 지원 자금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(리필 등 재사용 제품을 포함한다)로서 일 반제조상품을 금액 기준으로 30%이내 취급하는 재활용 제품 판매사업자	제품 유통·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 장식비 (신규분에 한한다), 매장매입비, 건축비	50억원



## 융자조건

지원분야	1회 지원 한도액	대출금리	상환방법
시설자금	50억원		
기술개발자금	4억원		
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	폐기물 재이용 시설: 5억원 공장건축비(폐기물 재이용 시설에 한함) : 3억원	3년거치 7년상환(10년 이내)	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
경영안정자금	10억원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창업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승인액의 30% 이내	2년거치 3년상환 (5년 이내)	
유통·판매지원자금	2억원		

## 융자신청

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소정양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신청서 교부처 |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처 (전화 032-560-1600~7), 각 지사 및 사업소

신청서 접수처 | 한국환경자원공사 본사 자금융자팀, 전지사 산업지원팀, 제주출장소(우편접수 가능)

융자신청기간 | 2005년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며, 접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

\* 자세한 내용은 [www.envico.or.kr](http://www.envico.or.kr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